

라. 소비자농업교육

□ 목 적

-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·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도시민과 농업인간 신뢰 구축
- 도시소비자를 경기도 우수농산물의 알파컨슈머로 육성·관리하여 농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감동체험·홍보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 실시

□ 추진계획

- 교육기간 : 4월~10월
- 교육장소 : 농업기술원 및 도내 우수농장 등
- 교육인원 : 400명
- 교육대상 : 도시소비자 및 어린이 등

마. 전문강사양성교육

□ 목 적

- 지식기반 농업사회에서 체계적인 농업인력 개발을 위해 농촌지도인력을 농업인력개발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
- 농업인 교육훈련담당자 역량 강화 및 일선 시군 농촌지도사들의 전문강사로서 요구되는 교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

□ 추진계획

- 교육기간 : 연중
- 교육장소 : 농업기술원 및 전문교육기관
- 교육대상 및 인원 : 시군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담당자 및 농촌진흥공무원 등

※ 관련 법령

-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(법률 제6353호, 2001. 01. 16) 및 동법시행령 제 8~10조(대통령령 제15135호, 1996. 08. 08)
 -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
 - 농업인,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
 - 전업농업인, 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

-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제3항(법률 제6221호, 2000. 01. 28)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의 9(농림부령 제1371호, 2000. 8. 10)
 - 기계화영농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 활동에 관한 사항
 - 기계화영농사를 선정하고 기계화영농사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
 - 기계화영농사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방안 강구

-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 제2항(법률 제5951호, 1999. 03. 31)
 -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술훈련 기본계획 수립
 - 농업기계 기술, 안전관리 등의 교육
 -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교육

-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64조(대통령령 제17638호, 2002. 06. 25)
 -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
 -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
 - 기타 전문 농업인력 육성시책 관련 교육